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40
-----------	----

제출일자 : '99. 7. 16.

제출자 : 달성군

**1. 개정사유**

농지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99. 3. 31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법 제24조(농지 임대차 기간), 제25조(농지임차료 상한), 제27조(농지임대차 해지의 제한)가 폐지됨으로서, 농지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함.

2. 개정근거

- 농지임대차관리법 폐지('96. 1. 1)
- 농지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폐지('99. 3. 31)

3. 주요골자**() 제명변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내용변경

- 근거법령 변경 : 농지임대차관리법 → 농지법
- 농지법 제25조('99.3.31 폐지)에 근거한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 삭제
- 농지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기능" 등 불필요한 사항 삭제

4. 개정조례(안): 따로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은 화원, 능공, 대사유, 가창, 하빈, 옥포, 현풍, 유가, 구지면 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관할구역)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당해 읍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정수) 읍면별 위원회의 농지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위원의 추천 및 선임) ① 리장은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으로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읍면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리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읍면 위원 후보자 추천서를 읍면장에게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한 사항과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재적 등)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되어 확인·조사 및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확인조사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당사자와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에 있는 경우
- (3)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확인·조사 및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4) 위원은 확인조사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제3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미지하여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 지 관 리 위 원 수 현 황

구분 읍면리	농 지 관 리 위 원 정 수				비고
	개	읍·면장	농임인대표 위원	농임관련기관 단체추진위원	
개	253명	9	199	45	
화원	22	1	16	5	
논공	27	1	21	5	
다사	23	1	17	5	
가창	30	1	24	5	
하민	27	1	21	5	
옥포	23	1	17	5	
한풍	31	1	25	5	
유가	34	1	28	5	
구지	36	1	30	5	

【별지 제1호 서식】

농 지 관 리 위 원 후 보 자 추 친 시			
추 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자를 농지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 유판 ○○
리의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19 년 월 일

리장주소

성명 (인)

첨부서류 : 1. 후보자 농업경영 현황 1부.